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도레이社 5공단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구 미 시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의안번호	제 호
의결년월일	

제출년월일 : 2014. 8.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구미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매입한 공장용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함으로써 산업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 도레이社의 5공단 신규투자에 따른 부지 임대 지원으로 전후방산업 및 新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2. 주요내용

【부지매입】

- 사업내용 :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53.9천㎡
- 위 치 : 구미 하이테크밸리(5공단)내
- 사업기간 : 2014년 ~ 2018년(5년간 1단계)
- 기준가격 : 14,000백만원(사업비 기준)
 - ※총사업비 70,100백만원 (국비42,100 도비14,000 시비14,000)
- 입주기업 : 도레이첨단소재(주) ※ 11. 6. 28 MOU체결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3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 백만원)

[illegible]

2014년도 관리계획(수시-3차) 재산목록(취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천㎡,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매각 시기	사 유	재산소유자 주소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 량					
계			53.9	14,000				
취득	소계		53.9	14,000				
	토 지 (대)	하이테크밸리내	53.9	14,000	2014년	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	한국 수자원공사	
계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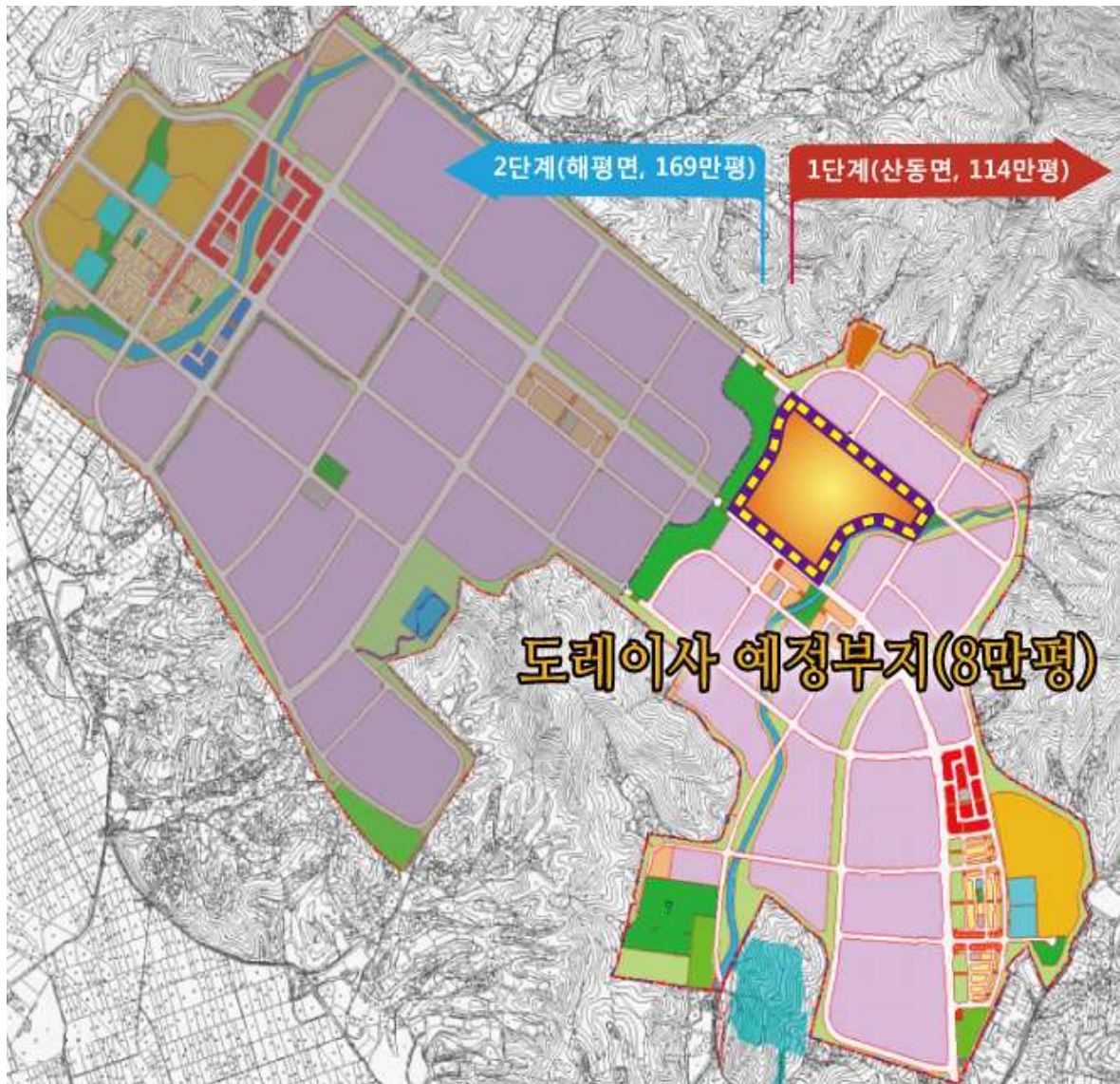
취 득 대 상 재 산 현 황

□ 재산표시

○ 소 재 지 : 구미 하이테크밸리(5공단)내

○ 부지매입 : 도레이社 외국인투자지역 53.9천㎡

□ 지 적 도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을 말한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 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 가. 취득의 경우: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연도 예산을 시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